

참고

2023년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안내

□ 2023년 돌봄취약가구 소득기준

(단위: 원)

구분	가구규모						
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 75%	1,558,419	2,592,116	3,326,112	4,050,723	4,748,016	5,420,986	6,080,636
기준 중위소득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중위소득 120%	2,493,470	4,147,386	5,321,779	6,481,157	7,596,826	8,673,577	9,729,018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79,534원씩 증가(8인가구:8,987,049원)

□ 관련 증빙 서류 안내

용도		구비서류 및 설명
대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(기준중위소득 60%이하만 해당) - 다문화가족 :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국적 취득자(귀화 증빙서류)
가구원 수 확인 (공통)	국민 또는 재외국민	○ 주민등록표 등본(세대주와 세대원 포함)
	국내 거주 외국인	1) 외국인등록사실증명 -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 발급이 안 되므로,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(아래)를 제출
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		○ 건강보험자격(득실)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(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, 전화 : 1577-1000) -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,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※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요건 파악 - 지역보험의 경우 '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'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) 기재 서류 생략 가능 -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'건강보험증'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
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	건강보험 가입자	○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
	건강보험 미가입자	○ 아래 서류 중 택일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보수지급명세서 ③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④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(국민연금공단 발행) ⑤ 소득금액증명서(세무서장 발행)

※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·배포하는 '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' 참고